

인천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가단23531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밀알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규

변 론 종 결 2021. 5. 27.

판 결 선 고 2021. 6. 17.

주 문

1. 이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 중 별지 송금 내역표의 순번 112 기재 금액 중 927,812원, 순번 113, 116, 117, 121 내지 129, 131, 139, 140, 142, 144 내지 148, 160, 162 내지 165 기재 각 금액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송금 내역표의 순번 112 기재 2017. 11. 14. 체결된

1,000,000원의 증여계약을 927,812원의 한도 내에서, 같은 표의 순번 113 내지 165 기재 각 일자에 체결된 각 금액에 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622,813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케이비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에 관하여, 별지 송금 내역표의 순번 112 기재 2017. 11. 14. 체결된 1,000,000원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927,812원의 한도 내에서, 같은 표의 순번 113 내지 165 기재 각 일자에 체결된 각 금액에 관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622,813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경부터 2016. 6. 15.경까지 C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178,993,000원을 대여하고 C로부터 대여원리금을 일부 변제받았다.

나. 원고는 C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1539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3. 28. ‘C는 원고에게 62,86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2018. 3.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관련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C에 대하여 “C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내가 운영하는 계의 계원에게 빌려줄 자금이 필요한데 계원이 믿을 만한 사람이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놓아 돈을 불려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합계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3163호로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C는 2018. 8. 28.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24,000,000원을 형사 공탁하였으며, 위 법원은 같은 달 29. C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라. 2017. 11. 14.부터 2018. 8. 16. 사이에 C 명의의 IBK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 이하 ‘C 예금계좌’라 한다)에서 C의 아들인 피고 명의의 KB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 F) 및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 별지 송금 내역표 기재와 같은 각 금원이 송금되었다(이하 위 송금 내역표의 순번 112 내지 165 기재 각 일자의 송금행위를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 하고, 계좌번호 D인 계좌를 ‘이 사건 쟁점 예금계좌’라 하며, 피고 명의의 위 각 예금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예금계좌’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3호증의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C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 있는데, C가 무자력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돈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증여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별지 송금 내역표 중 순번 112 기재 체결된 1,000,000원의 증여계약을 927,812원의 한도 내에서, 같은 목록 순번 113 내지 165 기재 각 증여계약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93,622,813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C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쟁점 예금계좌를 사용한 것이라면, 위 예금계좌에 관하여 명의신탁자인 C와 명의수탁자인 피고 사이에 예금계약과 관련한 명의신탁계약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중 이 사건 쟁점 예금계좌에 관한 각 명의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수탁자인 피고가 위 각 예금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사용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반환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93,622,813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에 대하여 2014. 2.경부터 2016. 6. 15.경까지 발생한 대여원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C로 하여금 원고에게 62,86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원고가 수령한 형사 공탁금 24,000,000원은 관련 판결에 따른 원리금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C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C가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무렵 무자력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증여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이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해도, 이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6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C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각 예금계좌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이루어진 사정만으로 C가 피고에게 각 해당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C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각 예금계좌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이루어진 외에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수년에 걸쳐 C 예금계좌로 수차례 돈이 송금되었고, 위와 같은 입출금 거래가 수시로

이루어졌다.

㉡ 별지 송금 내역표 중 순번 112, 113, 116, 117, 121 내지 129, 131, 139, 140, 142, 144 내지 148, 160, 162 내지 165 기재 각 송금행위(이하 ‘이 사건 쟁점 송금행위’라 한다)는 C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쟁점 예금계좌로 송금된 내역이다. 원고가 위 각 송금행위에 관하여 C를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서 C와 피고는 ‘C의 부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쟁점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C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쟁점 예금계좌의 개설 시점은 2016. 10. 5.인데, C는 위 형사 사건에서 ‘당초 딸인 H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면서 금융거래를 하여 오다가, 원고가 이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하면서 위 예금계좌 대신 피고의 예금계좌를 빌려 사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쟁점 예금계좌에는 C의 지인인 I, J 등과 입출금 거래한 내역이 다수 있고, 수차례 ‘젓돈’ 명목으로 입금된 내역이 있으며, 이 사건 쟁점 예금계좌에서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전화이체, CD 입출금 등 수시로 입출금한 내역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예금계좌는 예금주인 피고가 아니라 C가 그 접근매체 등을 가지고 위 쟁점 예금계좌를 지배관리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사건 쟁점 예금계좌로 피고 명의로 받은 대출금(2018. 5. 18.자 29,896,776원, 2018. 7. 26.자 20,000,000원 및 2019. 5. 9.자 15,000,000원)이 송금되어 사용되었다.

㉣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통하여 이체된 각 금원을 피고가 실질적으로 사용하거나 객관적으로 피고와 C 사이에 위 각 금원을 무상으로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다.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C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이 사건 쟁점 송금행위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쟁점 예금계좌에 대한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수탁자가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신탁자가 출연한 예금채권을 대외적으로 수탁자 명의로 보유하고, 대내적으로 신탁자가 그 예금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내용은 접근매체 등을 가진 신탁자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여, 신탁자가 출연한 예금을 신탁자가 다시 출금하기 전까지 수탁자가 이를 자신 명의 계좌에 보유하기로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신탁자가 예금을 인출하게 되면 그 인출액의 한도에서 예금주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의 일방적 해지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는 경우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수탁자인 명의인이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울러 금융회사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금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되어 사용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반환만이 문제 되는데, 신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예금을 인출사용하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신탁자가 수탁자의 통장과 인장, 접근매체 등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등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때에는 신탁자가 통상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탁자가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자가 명의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사용했다는 점을 수탁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수탁자가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금을 인출이체하는 데 명의인 본인 확인이나 본인 인증 등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일반적으로는 명의인이 예금을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C의 아들인 점과 앞서 본 이 사건 쟁점 예금계좌에 관한 입출금 등 거래내역, 이에 대한 C의 형사 사건에서의 진술 및 피고 또한 C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쟁점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C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C 사이에는, 피고가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대외적으로 수탁자인 피고 명의로 예금채권을 보유하되, 대내적으로는 C가 위 예금채권에 대한 처분권한 등을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 예금계좌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신탁자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이는 신탁자가 책임재산인 금전을 은닉한 것으로 책임재산의 감소로 평가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쟁점 송금행위는 C의 책임재산을 일탈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2) 이 부분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한편,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계속 중에 그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나) 예금주 명의신탁 관계에 있어 접근매체 등을 가진 신탁자가 예금을 인출하게 되면 그 부분에 관한 예금주 명의신탁관계는 종료되고, 예금채권의 대상물로서 인출된 예금의 소유권은 대외적으로도 신탁자가 보유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로서 명의신탁된 예금 중 신탁자가 인출하는 등으로 처분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하여는 예금주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됨과 아울러 일탈되었던 책임재산이 다시 신탁자에게 복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C가 이 사건 쟁점 송금행위 당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쟁점 예금계좌를 지배관리하면서 사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 송금행위 최종 송금일 무렵인 2018. 8. 말일 무렵에는 이 사건 쟁점 예금계좌로 송금한 위 각 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쟁점 송금행위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데,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쟁점 송금행위에 관한 예금주 명의신탁관계는 C가 이 사건 쟁점 송금행위에 의해 명의신탁한 예금을 사용함에 따라 이미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이 사건 쟁점 송금행위에 의하여 일탈되었던 C의 책임재산은 C에게 복귀되었다.

(다) 결국 이 부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3)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쟁점 송금행위에 관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가액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쟁점 송금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송금행위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송금 내역표 중 순번 114, 115, 118, 119, 120, 130, 132 내지 138, 141, 143, 149 내지 159, 161 기재 각 송금행위가 이 사건 쟁점 예금계좌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가액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 각 금액은 C 예금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 순번 130) 및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된 내역에 해당하고, 이 사건 쟁점 예금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아닐 뿐 아니라,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각 예금계좌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쟁점 송금행위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중 이 사건 쟁점 송금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송금 행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다선

송금 내역

순번	일시	구분	금액(원)
1	2015-03-17	송금	250,000
2	2015-03-21	송금	100,000
3	2015-05-03	송금	50,000
4	2015-05-30	송금	250,000
5	2015-06-15	송금	50,000
6	2015-06-15	송금	250,000
7	2015-08-06	송금	350,500
8	2015-08-29	송금	250,000
9	2015-09-18	송금	250,000
10	2015-10-14	송금	250,500
11	2015-11-04	송금	300,000
12	2015-11-19	송금	300,000
13	2015-11-27	송금	250,000
14	2015-12-13	송금	100,000
15	2015-12-17	송금	150,000
16	2015-12-18	송금	5,000,000
17	2016-01-12	송금	200,000
18	2016-02-04	송금	250,000
19	2016-02-14	송금	250,000
20	2016-03-15	송금	250,000
21	2016-03-28	송금	250,000
22	2016-03-30	송금	100,000
23	2016-04-04	송금	300,000
24	2016-04-20	송금	200,000
25	2016-04-28	송금	250,000
26	2016-05-12	송금	50,000,000
27	2016-05-12	송금	8,000,000
28	2016-05-12	송금	7,000,000
29	2016-05-13	송금	1,000,000
30	2016-05-25	송금	100,000
31	2016-07-05	송금	600,000
32	2016-07-17	송금	1,000,000
33	2016-10-06	송금	230,000
34	2016-10-12	송금	100,000
35	2016-10-15	송금	55,000
36	2016-10-15	송금	140,000
37	2016-10-17	송금	300,000
38	2016-10-17	송금	4,300,000
39	2016-10-25	송금	300,000
40	2016-10-28	송금	150,000
41	2016-10-31	송금	200,000
42	2016-11-01	송금	200,000
43	2016-11-09	송금	150,000

44	2016-11-10	송금	3,700,000
45	2016-11-10	송금	550,000
46	2016-11-12	송금	400,000
47	2016-11-14	송금	1,600,000
48	2016-11-15	송금	1,700,000
49	2016-11-15	송금	3,200,000
50	2016-11-18	송금	90,000
51	2016-11-21	송금	1,300,000
52	2016-11-22	송금	240,000
53	2016-11-22	송금	160,000
54	2016-11-22	송금	20,000
55	2016-11-27	송금	80,000
56	2016-11-28	송금	1,400,000
57	2016-11-28	송금	330,000
58	2016-11-28	송금	110,000
59	2016-11-29	송금	2,100,000
60	2016-11-30	송금	500,000
61	2016-11-30	송금	1,000,000
62	2016-11-30	송금	420,000
63	2016-12-02	송금	1,000,000
64	2016-12-05	송금	1,000,000
65	2016-12-07	송금	100,000
66	2016-12-07	송금	4,900,000
67	2016-12-08	송금	130,000
68	2016-12-12	송금	1,120,000
69	2016-12-13	송금	200,000
70	2016-12-13	송금	1,500,000
71	2016-12-15	송금	2,350,000
72	2016-12-15	송금	200,000
73	2016-12-19	송금	150,000
74	2016-12-22	송금	30,000
75	2016-12-26	송금	3,500,000
76	2017-01-06	송금	8,000,000
77	2017-01-07	송금	500,000
78	2017-01-10	송금	1,000,000
79	2017-01-18	송금	1,000,000
80	2017-01-20	송금	2,500,000
81	2017-01-23	송금	9,000,000
82	2017-02-02	송금	1,400,000
83	2017-03-17	송금	5,000,000
84	2017-07-30	송금	4,000,000
85	2017-07-31	송금	5,000,000
86	2017-08-05	송금	1,200,000
87	2017-08-05	송금	600,000
88	2017-08-08	송금	5,000,000
89	2017-08-16	송금	10,000,000
90	2017-08-18	송금	300,000

91	2017-08-19	송금	9,300,000
92	2017-09-23	송금	6,000,000
93	2017-10-01	송금	14,000,000
94	2017-10-02	송금	2,500,000
95	2017-10-11	송금	9,000,000
96	2017-10-14	송금	6,500,000
97	2017-10-15	송금	2,400,000
98	2017-10-19	송금	500,000
99	2017-10-19	송금	600,000
100	2017-10-27	송금	800,000
101	2017-10-27	송금	6,500,000
102	2017-10-27	송금	450,000
103	2017-10-30	송금	4,000,000
104	2017-11-01	송금	1,800,000
105	2017-11-03	송금	850,000
106	2017-11-03	송금	570,000
107	2017-11-05	송금	300,000
108	2017-11-06	송금	450,000
109	2017-11-08	송금	200,000
110	2017-11-11	송금	2,000,000
111	2017-11-12	송금	2,900,000
112	2017-11-14	송금	1,000,000
113	2017-11-14	송금	3,000,000
114	2017-11-15	송금	600,000
115	2017-11-15	송금	1,000,000
116	2017-11-15	송금	2,500,000
117	2017-11-15	송금	4,000,000
118	2017-12-01	송금	1,000,000
119	2017-12-04	송금	1,000,000
120	2018-01-02	송금	9,000,000
121	2018-01-04	송금	3,000,000
122	2018-01-23	송금	2,500,000
123	2018-01-25	송금	7,400,000
124	2018-01-26	송금	7,000,000
125	2018-01-27	송금	1,100,000
126	2018-01-29	송금	700,000
127	2018-01-29	송금	500,000
128	2018-01-30	송금	1,500,000
129	2018-02-13	송금	100,000
130	2018-02-19	송금	100,000
131	2018-02-19	송금	500,000
132	2018-03-02	송금	8,000,000
133	2018-03-05	송금	2,000,000
134	2018-03-06	송금	1,900,000
135	2018-03-12	송금	800,000
136	2018-03-15	송금	650,000
137	2018-03-20	송금	1,700,000

138	2018-03-22	송금	300,000
139	2018-03-23	송금	490,000
140	2018-03-23	송금	4,300,000
141	2018-03-24	송금	250,000
142	2018-03-26	송금	2,000,000
143	2018-03-26	송금	250,000
144	2018-03-27	송금	4,000,000
145	2018-03-29	송금	80,000
146	2018-03-29	송금	800,000
147	2018-03-30	송금	3,800,000
148	2018-03-30	송금	2,400,000
149	2018-03-31	송금	500,000
150	2018-04-02	송금	80,000
151	2018-04-04	송금	200,000
152	2018-04-05	송금	1,000,000
153	2018-04-06	송금	500,000
154	2018-04-07	송금	450,000
155	2018-04-08	송금	170,000
156	2018-04-10	송금	1,000,000
157	2018-04-10	송금	950,000
158	2018-04-14	송금	400,000
159	2018-04-15	송금	300,000
160	2018-04-15	송금	600,000
161	2018-04-20	송금	500,000
162	2018-05-05	송금	45,000
163	2018-06-15	송금	2,000,000
164	2018-07-16	송금	1,500,000
165	2018-08-16	송금	2,300,000
합계			338,921,000